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제안의 보완)</p> <p>① (생 략)</p> <p>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u>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u></p>	<p>제7조(제안의 보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u>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u></p>